

2019.08.13

'2019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안내

I. 개요

관세청 내 2019년도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 및 법규 사항을 발표하여 주요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II. 주요사항

1. 개정 사유

- 중소기업 등에 대한 FTA 및 수출입 지원
-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도모
- 공정하고 투명한 법제도 구축
- 세제 혜택을 통한 내수시장 활력 제고

2. 개정 내용

- 가. 원산지 증명서 발급신청 서류 간소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0조 제1항 제4호)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FTA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의 경우 최종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 원산지 소명서 제출 생략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7항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수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등 증명서 대체
- 나.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유효기간 연장 (관세법 시행령 §31조 제5항)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유효기간을 종전 3년 → 3년 + 2년 이내 연장 가능으로 개정

2019.08.13

'2019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안내

II. 주요사항

2. 개정 내용

다. 수출용원재료 관세 등 일괄납부 무담보원칙 도입 (환급특례법 §6)

-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6개월 범위 내 일괄납부 가능
- 원칙 : 담보제공 생략 / 예외 : 담보제공 (관세법령 등 위반자, 체납자 등)

라. 거래 당사자간 상계 거래 사후보고 허용 (외국환거래규정 §5-4조 제2항)

- 종전 : 거주자·비거주자간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개정 : 상계 처리 후 1개월 내 외국환은행장에게 사후 보고 가능

마. 국내에서 다국적 기업의 제3자에게 거래대금 지급 시 사후보고 허용 (외국환거래규정 §5-10조 제4항)

-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다국적 회사의 자금관리전문회사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 1개월내 외국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사후 보고 허용

바. 생산지원비 일괄 가산방법 개선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7)

- 종전 : 생산지원비 전액을 최초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
- 개정 : 생산지원비 일괄 납부 시 최초 수입되는 물품 (수입물품에 관세율이 다른 경우, 관세율이 다른 물품별로 안분하여 각각의 최초 수입분)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

2019.08.13

'2019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안내

II. 주요사항

2. 개정 내용

사. 특수관계자 자료 미제출 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관세법 §37조의 4)

-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가산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구분할 수 없는 자료 등 과세가격 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고 가격이 아닌 동종·동질물품가격, 유사물품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
- 단, 정상적 가격 결정 관행임 등을 증명할 경우 신고 가격으로 과세

아.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외국환거래규정 §5-4조 제2항)

-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자는 보고서 제출 필요
-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전심사 결과를 변경·철회·취소 가능

자.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추가 (관세법 시행령 §248조의 2,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

- 종전 : HS 87류 중고차 중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 개정 :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HS 3915호 품목 (플라스틱의 웨이스트·페어링·스크랩) 품목 추가

◇ 『2019년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 “붙임”

◇ 시행일자 : 각 조항 별 시행일 상이

2019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2019. 8.



목 차

중소기업 등에 대한 FTA 및 수출입 지원	
① FTA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품목 확대	p.1
②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증명서로 원산지소명서 대체 허용	p.2
③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배제범위 확대	p.3
④ 수출용원재료 관세 등 일괄납부 무담보원칙 도입	p.4
⑤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HS 2017로 전환	p.5
⑥ 품목분류 사전심사 'HS 6단위 회신제도' 신설	p.6
⑦ 거래 당사자간 상계 거래 사후보고 허용	p.7
⑧ 국내기업이 다국적 기업의 제3자에게 거래대금 지급 시 사후보고 허용	p.8
⑨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유효기간 연장	p.9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도모	
⑩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필수제출	p.10
⑪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p.11
⑫ 생산지원비 일괄 가산방법 개선	p.12
⑬ 특수관계자 자료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p.13
⑭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등 신용카드 납부제도 신설	p.14
⑮ 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에 대한 업무 편의 증대	p.15
⑯ 무인환전기기 환전 금액 한도 확대	p.16
⑰ 온라인환전영업자의 외국통화 등 매입 허용	p.17
공정하고 투명한 법제도 구축	
⑱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추가	p.18
⑲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p.19
⑳ 유통이력신고 대상 물품 조정	p.20
세계 혜택을 통한 내수시장 활력 제고	
㉑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기한 연장	p.21
㉒ 휘발유, 경유,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의 단계적 환원	p.22

1 FTA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품목 확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161개 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이발급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품목별 필수공정이 국내에서 수행되었고 필수공정 수행사실을 증명할 경우 원산지입증서류 추가제출 없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p>□ 82개 품목 추가(총 243개 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력 수출물품인 김치, 철강기계류 등 식품류와 기계류를 중심으로 품목 확대

○ (기대효과) 주요 공산품의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절차 간소화

○ (시행일) '19. 7. 1.(「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제4항, 별표2의2 개정)

② FTA 원산지 간편인정 대상품목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증명서로 원산지소명서 대체 허용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원산지 소명서 등 필수 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 ● <u>원산지소명서</u> 	<p>□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u>FTA 원산지 간편인정 품목*</u>은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 원산지소명서 제출 생략</p> <p>*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포괄확인서 인정되는 물품 농산물: 1,028개 품목 / 수산물: 81개 품목 / 축산물: 5개 품목/ 전통식품 32개 품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좌 동 > ● < 좌 동 > ● < 좌 동 > ● <u>원산지소명서(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증명서로 대체 가능)</u>

○ (기대효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서류 간소화

○ (시행일) '19년 하반기예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제4호 개정예정)

3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 물품 배제범위 확대

(세원심사과, 042-481-787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물품*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품목에 대한 다세율 적용으로 인해 과다환급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107개 물품(「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별표2) <p>⇒ 대·중소기업 등 <u>모든 환급업체가 환급제한(세율별 환급사용물량*)</u></p> <p>* 모든 환급업체가 전년도 세율별 수입 물량 비중에 따라 환급물량을 세율별로 안분하여 해당 수입신고필증을 환급에 사용</p>	<p>□ 환급사용물량 제한대상물품*의 범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좌 동 > <p>⇒ <u>중소기업자인 경우 환급제한 배제*</u></p> <p>* 세율별 환급액 조정 없이 수입 원재료 납부 세액을 환급</p> <p>※ 그 밖의 환급사용물량 제한 배제사유는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참조</p>

○ (기대효과) 중소기업 환급신청 및 환급금액 산정절차 간소화

○ (시행일) '19. 8. 1.(「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9조 개정)

4 수출용원재료 관세 등 일괄납부 무담보원칙 도입

(세원심사과, 042-481-7873)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input type="checkbox"/>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6개월의 범위내 일괄납부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u>담보제공</u> • (예외) <u>담보제공 생략</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신용담보업체 (수출·환급실적 등 요건충족) 	<p><input type="checkbox"/> < 좌 동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u>담보제공 생략</u> • (예외) <u>담보제공</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법령 등 위반자, 체납자 등 * 관세법 제248조와 동일하게 규정 * 무담보 원칙, 예외적 담보 가능 (Negative 입법방식 전환)

○ (기대효과) 관세법상의 모든 수입물품에 대한 무담보원칙을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시에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중소 수출입 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 (시행일) '19. 7. 1.(「환급특례법」 제6조 개정)

5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HS 2017로 전환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실, 042-481-320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input type="checkbox"/>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u>HS 2012</u>로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HS 2012 ↔ 2017 연계표」를 활용하여 수출입품목의 HS 2012 세번을 확인하여야 원산지기준 확인 가능 <p><전기자전거 수출신고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같은 품목에 대해 HS 연계표를 활용하여 HS 번호를 2번 확인하여야 수출신고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가능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50%; background-color: #fff9c4;">수출신고시</td> <td style="width: 10%;"></td> <td style="width: 40%; background-color: #fff9c4;">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td> </tr> <tr> <td>HS 2017로 신고 HS 8711.60</td> <td style="vertical-align: middle;">HS연계표 ←-----→</td> <td>HS 2012 원산지기준 확인하여 신고 HS 8711.90</td> </tr> </table>	수출신고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HS 2017로 신고 HS 8711.60	HS연계표 ←-----→	HS 2012 원산지기준 확인하여 신고 HS 8711.90	<p><input type="checkbox"/> 한-아세안 FTA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u>HS 2017</u>로 전환·시행</p> <p><전기자전거 수출신고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HS 2017로 HS 번호와 원산지기준을 확인하여 수출신고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50%; background-color: #fff9c4;">수출신고시</td> <td style="width: 50%; background-color: #fff9c4;">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td> </tr> <tr> <td colspan="2">HS 2017로 신고 HS 8711.60</td> </tr> </table>	수출신고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HS 2017로 신고 HS 8711.60	
수출신고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HS 2017로 신고 HS 8711.60	HS연계표 ←-----→	HS 2012 원산지기준 확인하여 신고 HS 8711.90									
수출신고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HS 2017로 신고 HS 8711.60											

- (기대효과) 쉽고 정확한 수출입물품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으로 FTA 활용 편의성 향상
- (시행일) '19년 하반기예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예정)

6 품목분류 사전심사 ‘HS 6단위 회신제도’ 신설

(세원심사과, 042-481-7738)

종 전	달라지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품목분류 사전심사(HS 10단위)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기한(30일) <u>< 신 설 ></u>	<input type="checkbox"/> < 좌 동 > <input type="checkbox"/> 수출물품 HS 6단위 회신제도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리기한(15일)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인이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만 요청할 경우 소호까지 회신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적용대상은 FTA 원산지 확인을 위한 수출물품이고, 신청방법은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 ‘신청사유’ 항목란에 ‘수출물품 6단위 소호 확인’을 체크하면 됨.

* 품목분류 사전심사 :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등이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물품의 품목분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여 품목번호를 회신 받는 제도

○ (기대효과) FTA 활용 등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강화

○ (시행일) '19. 4. 22.(「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제5항 신설)

7 거래 당사자간 상계 거래 사후보고 허용

(외환조사과, 042-481-7938)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거주자·비거주자간 채권·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u>사전에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함</u></p> <p>□ 수출입대금 수령시 비거주자가 임의로 상계하고 그 잔액을 수령 하는 경우만 30일내 사후보고 허용</p>	<p>□ 거주자·비거주자간 채권·채무를 상계하는 경우에 대하여 <u>상계 처리 후 1개월 내 외국환은행장에게 사후 보고 가능</u></p> <p>※ (주의) 다국적기업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 다자간 상계는 종전과 같이 한국은행 총재 사전 신고 요</p>

○ (기대효과) 수출입대금 결제 방식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를 완화하여, 기업의 자금 유동성과 무역 원활화 지원

○ (시행일) '19. 5. 28.(「외국환거래규정」 제5-4조제2항 개정)

8 국내기업이 다국적 기업의 제3자에게 거래대금 지급 시 사후 보고 허용

(외환조사과, 042-481-7938)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거주자가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장(5천불초과~1만불이내), 한국은행총재(1만불초과)에게 <u>사전 신고</u></p> <p>• <u>< 예외 신설 ></u></p>	<p>□ < 좌 동 ></p> <p>• 거주자가 다국적회사인 비거주자와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u>다국적회사의 자금관리전문회사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외국은행장 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사후 보고 허용</u></p>

<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자금관리전문회사 거래 개요도 >



○ (기대효과) 국내 기업의 글로벌 다국적 기업과의 거래편의 제공으로 국제 경쟁력 확보, 무역 원활화 지원

○ (시행일) '19. 5. 28.(「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제4항 신설)

9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유효기간 연장

(법인심사과, 042-481-765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유효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p><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유효기간 <u>확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년 + <u>2년 이내 연장 가능</u>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 해외 모회사와 국내 지사 등 특수관계자간에 거래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와 상호합의를 통해 결정하여 주는 제도

○ (기대효과) 성실신고 의지가 있는 다국적기업에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 (시행일) '19. 7. 1.(「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5항 개정)

10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등 필수제출

(특수통관과, 042-481-783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목록통관 시 수하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u>선택</u> 기재	□ 목록통관 시 수하인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u>필수</u> 기재

* 목록통관 : 개인이 자가용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이하(미국發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제도

○ (기대효과) 목록통관 시 수하인 식별이 명확해짐에 따라 타인명의 도용을 통한 불법면세·요건회피 및 사회안전 위해물품반입 등 차단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로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화물의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음

※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이용하여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외직구 물품의 실시간 통관진행 정보와 과거 통관이력 정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음

: 관세청 홈페이지 → 국민관심서비스(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 (시행일) '19. 6. 3. (「특송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3 개정)

* 3개월 계도기간 운영 후 '19.9.2.부터 시행 예정

11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명확화

(외환조사과, 042-481-7938)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외국환거래법 위반 후 5년 내 같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u>처분청 임의로 1년이내 범위에서 외국환 거래 행위 정지 가능</u></p>	<p>□ 외국환거래법 빈번 위반시 위반 횟수·금액에 따른 <u>행정처분(거래 정지) 기준 명확화</u></p> <p>* 외국환거래법 빈번 위반자 거래정지 기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구분</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위반 금액</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2회</th> <th style="background-color: #cccccc;">3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 15조 위반</td> <td>~1억원</td> <td>1개월</td> <td>3개월</td> </tr> <tr> <td>1~3억원</td> <td>1개월</td> <td>3개월</td> </tr> <tr> <td>3~5억원</td> <td>3개월</td> <td>6개월</td> </tr> <tr> <td>5억원 ~</td> <td>6개월</td> <td>12개월</td> </tr> <tr> <td rowspan="3">- 16·18조 위반 (외국환은행신고 대상)</td> <td>~1억원</td> <td>1개월</td> <td>3개월</td> </tr> <tr> <td>1~3억원</td> <td>3개월</td> <td>6개월</td> </tr> <tr> <td>3~5억원</td> <td>3개월</td> <td>6개월</td> </tr> <tr> <td>- 17조 위반</td> <td>5억원 ~</td> <td>6개월</td> <td>12개월</td> </tr> </tbody> </table>	구분	위반 금액	2회	3회	- 15조 위반	~1억원	1개월	3개월	1~3억원	1개월	3개월	3~5억원	3개월	6개월	5억원 ~	6개월	12개월	- 16·18조 위반 (외국환은행신고 대상)	~1억원	1개월	3개월	1~3억원	3개월	6개월	3~5억원	3개월	6개월	- 17조 위반	5억원 ~	6개월	12개월
구분	위반 금액	2회	3회																													
- 15조 위반	~1억원	1개월	3개월																													
	1~3억원	1개월	3개월																													
	3~5억원	3개월	6개월																													
	5억원 ~	6개월	12개월																													
- 16·18조 위반 (외국환은행신고 대상)	~1억원	1개월	3개월																													
	1~3억원	3개월	6개월																													
	3~5억원	3개월	6개월																													
- 17조 위반	5억원 ~	6개월	12개월																													

○ (기대효과) 처분 기준의 명확화로 행위에 대한 법적 예측성·안정성 증대

○ (시행일) '19. 5. 28.(「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별표 3의2 신설)

12 생산지원비 일괄 가산방법 개선

(법인심사과, 042-481-765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input type="checkbox"/> 생산지원비 일괄 가산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 일시 납부 시 생산지원비 전액을 <u>최초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u> 	<p><input type="checkbox"/> 생산지원비 일괄 가산방법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세 일시 납부 시 생산지원비 전액을 <u>최초 수입되는 물품(수입물품에 관세율이 다른 경우, 관세율이 다른 물품별로 안분하여 각각의 최초 수입분)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u>

○ (기대효과) 생산지원비 가산방법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착오로 인한 과소신고 사전 예방

○ (시행일) '19. 7. 1.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예관한고시」 제7조 개정)

13 특수관계자 자료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개선

(법인심사과, 042-481-765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자료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이 해당하지 않는 금액과 합산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u>전체금액을 합산하여 제1방법으로 과세</u> 다만, 납세자 요청시 동종·동질물품가격, 유사물품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 	<p>□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자료 미제출시 과세가격 결정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관계자가 가산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구분할 수 있는 자료 등 과세가격 결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u>신고가격이 아닌 동종·동질물품가격, 유사물품가격 등을 기초로 과세</u> 다만, <u>과세당국은 가격 결정전에 납세자와 협의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u> (예외) <u>납세자가 정상적 가격 결정 관행임을 증명할 경우 신고 가격으로 과세</u>

○ (기대효과)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해 과세가격 결정 효율화

○ (시행일) '19. 7. 1. 이후 세액심사 분부터 적용
(「관세법」 제37조의4제4항 및 제5항개정)

14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등 신용카드 납부제도 신설

(조사총괄과, 042-481-7818)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등은 <u>현금</u> 으로만 납부 가능	□ 통고처분 벌금 상당액 등은 현금 이외에 <u>신용카드 및 직불카드</u> 로도 납부 가능

- (기대효과) 통고처분 납부방법 다양화로 국민 편익 증대
 - 경미한 관세사범이 일시적인 자금 경색으로 통고처분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일시납 부담도 해소
- (시행일) '19. 7. 1.(「관세법」 제311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15 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에 대한 업무 편의 증대

(외환조사과, 042-481-793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환전영업자는 같은 날짜·같은 사람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에 대하여만 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 증명서 없이 매입·매각할 수 있음 <u><단서 신설></u></p>	<p>□ < 좌 동 ></p> <p>다만, <u>환전장부를 전산관리하는 환전영업자는 미화 4천불 이하에 대하여도 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 증명서 없이 매입·매각할 수 있음</u></p>

○ (기대효과) 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투명한 환전업 질서를 확립하고, 무서류 환전범위 확대로 환전영업자 이용 편의 증대

○ (시행일) '19. 5. 3.(「외국환거래규정」 제3-2조제5항 개정)

16 무인환전기기 환전 금액 한도 확대

(외환조사과, 042-481-793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무인환전기기 환전영업자는 같은 날짜 · 같은 사람 기준 매입·매각 가능 • 미화 <u>1천불</u> 범위에서	<input type="checkbox"/> < 좌 동 > • 미화 <u>2천불</u> 범위에서

○ (기대효과)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통한 환전시장의 경쟁력 확보,
 무인환전기기를 이용하는 국민 편의 증대

○ (시행일) '19. 5. 3.(「외국환거래규정」 제3-2조제8항 개정)

17 온라인환전영업자의 외국통화 등 매입 허용

(외환조사과, 042-481-793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input type="checkbox"/> 온라인환전영업자는 같은 날짜·같은 사람 기준 미화 2천불 이하 범위에서 외국통화등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각만 할 수 있음 	<p><input type="checkbox"/> < 좌 동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입 + 매각 가능

○ (기대효과)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통한 환전시장의 경쟁력 확보, 온라인 환전영업자를 이용하는 국민 편의 증대

○ (시행일) '19. 5. 28.(「외국환거래규정」 제3-2조제9항 개정)

18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추가

(통관기획과, 042-481-7857)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input type="checkbox"/>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87류 중고차 중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 	<p><input type="checkbox"/>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u>대상 추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좌 동 > • <u>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HS 3915호 품목(플라스틱의 웨이스트·페어링·스크랩)</u>

○ (기대효과) 폐기물 불법수출 차단을 통해 대외 신임도 제고 및 국제 무역질서 준수

○ (시행일) '19년 8월예정(「관세법시행령」 제248조의2 개정,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11 개정)

19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신설

(법인심사과, 042-481-765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신 설 ></p>	<p>□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사후관리 절차 명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u>사전심사결과</u>를 통보받은 자는 보고서 제출 ● <u>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u>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u>사전심사 결과</u>를 변경·철회·취소 가능

○ (기대효과) 사전심사 승인 내용의 이행여부 등에 관한 관리 강화

○ (시행일) '19. 7. 1.(「관세법」 제3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20 유통이력 신고대상 물품 조정

(통관기획과, 042-481-785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u>35개</u>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냉동고추, 뱀장어, 건고추, 향어, 활낙지, 사탕무당(설탕), 냉장명태, 냉동꽂치, 김치 ● 황기, 당귀, 냉동조기, 지황, 천궁, 작약, 미꾸라지, 가리비, 돔, 식용 천일염, 팔, 냉동꽃게,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떡장어, 에이치(H)형강 ● 비식용 대두유, 황금, 참깨, 활새꼬막 	<p>□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 <u>32개</u>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재지정> 황기, 당귀, 냉동조기, 지황, 천궁, 작약, 미꾸라지, 가리비, 돔, 식용 천일염, 팔, 냉동꽃게, 콩(대두), 참깨분, 땅콩, 도라지, 염장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떡장어, 에이치(H)형강 ● <삭 제> 비식용 대두유, 황금, 참깨, 활새꼬막 ● <추 가> 활방어

○ (기대효과) 국내 유통 중 원산지 둔갑 등 소비자 기만행위를 방지하여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

○ (시행일) '19. 8. 1.(「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1 개정)

21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적용기한 연장

(심사정책과, 042-481-775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p><input type="checkbox"/>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의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한시 인하 : (5%→3.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19. 6. 30. 	<p><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19. 12. 31.

○ (기대효과) 내수확대 및 자동차 산업 활력 제고

○ (시행일) '19. 7. 1.(「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6호)

22 휘발유, 경유, 부탄에 대한 탄력세율의 단계적 환원

(심사정책과, 042-481-775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input type="checkbox"/>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 제1호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탄력세율('19.5.7~8.31) : <u>492원/리터</u>	<input type="checkbox"/> 기간별 탄력세율 단계적 환원 • 탄력세율('19.9.1~) : <u>529원/리터</u>
<input type="checkbox"/>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 제2호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탄력세율('19.5.7~8.31) : <u>349원/리터</u>	<input type="checkbox"/> 기간별 탄력세율 단계적 환원 • 탄력세율('19.9.1~) : <u>375원/리터</u>
<input type="checkbox"/>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석유가스 중 부탄 • 탄력세율('19.5.7~8.31) : <u>256원/kg</u>	<input type="checkbox"/> 기간별 탄력세율 단계적 환원 • 탄력세율('19.9.1~) : <u>275원/kg</u>

- (기대효과) 휘발유, 경유, 부탄 등의 탄력세율을 단계적으로 환원함에 따라 소비자 물가 안정
- (시행일) '19. 9. 1. 이후부터 적용(「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